##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47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김영식·박대수·김용판

김정재 · 최승재 · 박성민

강대식 • 하영제 • 김선교

이주환 · 김도읍 · 권명호

전주혜・이양수・이 영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경제·문 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2호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	4
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